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90호

2019년 8월 23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1 4 8 8 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외 밤샘주차)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 공	고 제 1 4 9 1 호	보상계획열람공고	3
○ 공	고 제 1 4 9 2 호	보상계획열람공고	13
○ 공	고 제 1 5 0 1 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안전기준위반)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16
○ 공	고 제 1 5 0 2 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승용차 및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18
○ 공	고 제 1 5 0 5 호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냉정지구 소3-7호선 도로 개설공사]	20
○ 공	고 제 1 5 0 9 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안전기준위반)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22
○ 공	고 제 1 5 1 1 호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4
○ 의회사무국공고 제 1 1 2 호	남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32	
○ 의회사무국공고 제 1 1 3 호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42	
○ 보 건 소 공 고 제 6 6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53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19-1488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8. 20. ~ 2019. 9. 3.(14일간)
2.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외 밤샘주차)
3.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내용				
성 명	차량번호	주소	처분의 원인된 사실	예정된 처분내용
이*현	인천99아**85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230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이*순	인천84바**1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55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김*영	인천99아**4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48번길 1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배*영	인천81바**76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47번길 80-52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권*문	인천84바**9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566번길 13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이*정	인천99아**1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566번길 13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김*식	인천99아**88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67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노*후	인천99아**93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73-6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박*준	인천86바**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57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장*철	인천81바**6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105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김*욱	인천85사**5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1030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박*만	인천86바**0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 43-2	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4.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T. 032-453-2912)로 직접방문,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의견이 관련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남 동 구 청 장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491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 냉정지구 소3-7호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9. 8. 1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냉정지구 소3-7호선)
 - 명 칭 : 냉정지구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냉정지구 소3-7호선(B=6.0m, L=635m, A=5,250m²)
4.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135-6번지 일원
5. 보상시기 : 2019. 5월(진행 중) ~
6. 보상금 지급처 : 남동구청 건설과
7. 보상대상
 - 토지보상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135-6번지 일대 60필지
 - 지 장 물 : 도로개설 구간에 저축되는 지장물에 한함.
8.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하고 개별로 협의체결 후 현금보상
9. 보상절차 : 보상에 필요한 서류 및 보상금액은 추후 개별 통지
10. 열람기간 : 2019. 8. 19. ~ 2019. 9. 3.
11. 기타사항

토지조서 등은 남동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가 있으신 분은 건설과에 문의(☎032-453-2717) 또는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용지조서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잔여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관계		
신규 변경	1	수산동	136-7	도	3	3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이**	-	-	-		
당초	1	수산동	135-7	도	69	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번길 **, ***동 ***호	이**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 ***	**음료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변경	2	수산동	135-7	도	69	69	-							
당초	2	수산동	135-4	대	583	11	572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로 ***, ***동 ***호	정**	인천광역시 동구 셋골로 *** (송림동)	***** 협동조합	근저당권자, 지상권자		
변경	3	수산동	135-20	대	12	12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당초	3	수산동	135-11	전	115	115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로 ***, ***동 ***호	정**	인천광역시 동구 셋골로 *** (송림동)	***** 협동조합	근저당권자, 지상권자		
변경	4	수산동	135-11	전	115	115	-							
당초	4	수산동	136-5	도	22	2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이**	-	-	-		
변경	5	수산동	136-13	도	2	2	-							
변경	6	수산동	136-5	도	20	1	19							
당초	5	수산동	597-71	도	903	163	740	-	국 (건설부)	-	-	-		
변경	7	수산동	597-97	도	164	164	-							
변경	8	수산동	597-98	도	25	5	20							
당초	6	수산동	136-8	도	2	2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이**	-	-	-		
변경	9	수산동	136-8	도	2	2	-							
당초	7	수산동	135-10	전	141	5	136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번길 **, ***동 ***호	조** 외 2인	인천광역시 동구 셋골로 *** (송림동)	***** 협동조합	근저당권자, 지상권자		
변경	10	수산동	135-21	전	5	5	-							
당초	8	수산동	136-1	전	3,371	2	3,369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 **아파트 ***동 ****호	김**	-	-	-		
변경	11	수산동	136-12	전	2	2	-							
당초	9	수산동	135-1	전	879	187	692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송**	-	-	-		
변경	12	수산동	135-18	전	189	189	-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잔여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관계	
당초	10	수산동	135-2	대	844	223	621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번길 **, ***동 ***호	김**	인천광역시 동구 샛골로 *** (송림동)	***** 협동조합	근저당권자, 지상권자	
변경	13	수산동	135-22	도	2	2	-						
변경	14	수산동	135-19	대	29	29	-						
변경	15	수산동	135-16	전	191	1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수골로 ***-*	김**	-	-	-	
당초	11	수산동	131-3	대	268	4	264						
변경	16	수산동	131-6	대	4	4	-						
당초	12	수산동	131-1	전	3,104	139	2,96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수골로 ***-*	김**	-	-	-	
변경	17	수산동	131-5	전	138	138	-						
당초	13	수산동	131-4	대	132	17	1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 ***동 ****호	권**	-	-	-	
변경	18	수산동	131-7	대	18	18	-						
당초	14	수산동	134-2	전	4,526	331	4,19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 ***동 ****호	권**	-	-	-	
변경	19	수산동	134-6	전	255	255	-						
변경	20	수산동	134-7	전	78	78	-						
당초	15	수산동	산 25-1	과	19,993	235	19,7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 ***동 ****호	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을지로2가)	*****은행	근저당권자	
변경	21	수산동	산 25-6	과	235	235	-						
당초	16	수산동	134-3	대	357	90	26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 ***동 ****호	권**	-	-	-	
변경	22	수산동	134-8	대	93	93	-						
당초	17	수산동	134-1	대	440	60	380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이**	-	-	-	
변경	23	수산동	134-4	대	59	59	-						
당초	18	수산동	598	구	5,613	71	5,542	-	국(농림축 산 식품부)	-	-	-	
변경	24	수산동	598-1	구	72	72	-						
당초	19	수산동	288-1	전	1,084	121	963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하대로**번길 **,***동 ***호	신** 외 2인	-	-	-	
변경	25	수산동	288-9	전	121	121	-						
당초	20	수산동	287	답	1,260	69	1,191	인천 남구 학익동 *** ***(아파트) ***-****	박**	-	-	-	
변경	26	수산동	287-1	답	70	70	-						
당초	21	수산동	288-2	대	723	120	603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하대로**번길 **,***동 ***호	신** 외 2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로 ***(**동)	***** 협동조합	근저당권자, 지상권자	
변경	27	수산동	288-10	대	123	123	-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잔여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관계	
당초	22	수산동	288-3	전	1,025	90	93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수골로 **	신**	-	-	-	
변경	28	수산동	288-11	전	91	91	-						
당초	23	수산동	296-1	대	40	2	38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아파트 ***-****	황**	-	-	-	
변경	29	수산동	296-5	대	2	2	-						
당초	24	수산동	296-3	전	899	191	708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도화동 ***	황**	인천광역시 남구 **로 ***(**동)	**** 협동조합	근저당권자, 지상권자	
변경	30	수산동	296-7	전	190	190	-						
당초	25	수산동	288-4	대	367	2	36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수골로 **	신**	-	-	-	
변경	31	수산동	288-12	대	2	2	-						
당초	26	수산동	298	대	245	8	237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	이**	-	-	-	
변경	32	수산동	298-1	대	3	3	-						
변경	33	수산동	298-2	대	5	5	-						
당초	27	수산동	600-6	도	1,327	640	687	-	국 (건설부)	-	-	-	
변경	34	수산동	600-23	도	595	595	-						
변경	35	수산동	600-24	도	34	34	-						
변경	36	수산동	600-25	도	9	9	-						
당초	28	수산동	294-1	전	6,626	337	6,289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화동 ***	황**	-	-	-	
변경	37	수산동	294-1	전	6,286	10	6,276						
변경	38	수산동	294-13	전	340	340	-						
당초	29	수산동	288-5	전	1,084	67	1,017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	이**	서울특별시 중구 **로 ***(****가)	****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변경	39	수산동	288-13	전	66	46	20						
당초	30	수산동	산 33-1	임	3,132	66	3,066	-	국 (산림청)	-	-	-	
변경	40	수산동	산 33-1	임	3,326	2	3,324						
변경	41	수산동	산 33-5	임	66	59	7						
당초	31	수산동	305-1	전	5,504	41	5,46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동 ****호	황**	-	-	-	
변경	42	수산동	305-8	전	41	41	-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잔여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관계	
당초	32	수산동	305-7	전	1,488	228	1,260	인천 부평구 갈산동 *** ****아파트 ****-****	이**	-	-	-	
변경	43	수산동	305-9	전	226	226	-						
당초	33	수산동	299-1	전	3,378	185	3,193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 ***동 ****호	이**	-	-	-	
변경	44	수산동	299-3	전	190	190	-						
당초	34	수산동	304-1	전	2,162	316	1,846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김**	-	-	-	
변경	45	수산동	304-3	전	320	320	-						
당초	35	수산동	300-1	대	408	6	402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 ***-*** **동 *층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중구 **로** (***)가)	****은행	근저당권자	
변경	46	수산동	300-11	대	6	6	-						
당초	36	수산동	303	전	344	80	264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김**	-	-	-	
변경	47	수산동	303-1	전	89	89	-						
당초	37	수산동	300-7	대	331	42	289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 ***-*** **동 *층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중구 **로** (***)가)	****은행	근저당권자	
변경	48	수산동	300-14	대	42	42	-						
당초	38	수산동	302-1	대	40	18	22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김**	-	-	-	
변경	49	수산동	302-4	대	15	15	-						
당초	39	수산동	300-10	대	96	6	90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 ***-*** **동 *층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중구 **로** (***)가)	****은행	근저당권자	
변경	50	수산동	300-17	대	6	6	-						
당초	40	수산동	302-3	대	410	78	3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김**	-	-	-	
변경	51	수산동	302-6	대	82	82	-						
당초	41	수산동	302-2	전	175	9	166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김**	-	-	-	
변경	52	수산동	302-5	전	9	9	-						
당초	42	수산동	300-2	대	668	15	6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신**	-	-	-	
변경	53	수산동	300-12	대	16	16	-						
당초	43	수산동	300-8	대	243	7	236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신**	-	-	-	
변경	54	수산동	300-15	대	6	6	-						
당초	44	수산동	300-6	잡	207	28	17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을지로2가)	*****은행	근저당권자	
변경	55	수산동	300-13	잡	27	27	-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잔여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관계	
당초	45	수산동	300-9	도	36	29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을지로2가)	*****은행	근저당권자	
변경	56	수산동	300-16	도	35	35	-						
당초	46	수산동	301	대	489	117	37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수골로 **	신**	-	-	-	
변경	57	수산동	301-1	대	114	114	-						
당초	47	수산동	310-2	도	8,479	453	8,026	-	국 (건설부)	-	-	-	
변경	58	수산동	310-2	도	8,479	453	8,026						
당초	48	수산동	315-7	도	2,632	142	2,490	-	국 (건설부)	-	-	-	
변경	59	수산동	315-7	도	2,632	142	2,490						
당초	49	수산동	345-5	도	280	11	269	-	국 (건설부)	-	-	-	
변경	60	수산동	345-5	도	280	11	269						

□ 지장물 조서

구분	조서 번호	소재지	편입 토지	물건의 종류	구 조	단 위	수 량	물 건 소 유 자		토 지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당초	1	수산동	135-4대	사철나무	H=5.0m, D40	주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로 ***, ***동 ***호	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로 ***, ***동 ***호	정**	
변경	1	수산동	135-20대									
당초	2	수산동	135-4대, 135-11전	묘 목	H=1.0m, D5	주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로 ***, ***동 ***호	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로 ***, ***동 ***호	정**	
변경	2	수산동	135-20대, 135-11전									
				조경수	H=8.0m, D10	주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로 ***, ***동 ***호	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로 ***, ***동 ***호	정**	
당초	3	수산동	134-2전	조경석	0.15㎡	m	10.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권**	
변경	3	수산동	134-6전									
			135-1전					-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송**	

제1490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2019. 8. 23. 금요일

구분	조서 번호	소재지	편입 토지	물건의 종류	구 조	단 위	수 량	물 건 소 유 자		토 지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당초	4	수산동	134-2전	단풍나무	H=4.0m, D40	주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권**	
변경	4	수산동	134-6전									
				감나무	H=5.0m, D20	주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권**	
당초	5	수산동	134-2전	건 물		㎡	28.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권**	
변경	5	수산동	134-6전									
당초	6	수산동	산25-1과	아카시아	H=12.0m ,D50~60	주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권**	
변경	6	수산동	산25-6과									
당초	7	수산동	134-1대	경 계 목	D10	m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이**	
변경	7	수산동	134-4대									
			134-2전	화 단	꽃 발	㎡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권**	
당초	8	수산동	134-2전	꽃	장 미	㎡	44.0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권**	
변경	8	수산동	134-7전									
당초	9	수산동	134-1대	나무	H=2.0m	주	3.0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이**	-	-	
변경	9	수산동	134-4대									
			598구					-	-	-	국(농림 축산식품 부)	
당초	10	수산동	287답	밤나무	H=1.5m	주	2.0	인천 남구 학익동 *** ****아파트 ***-****	박**	인천 남구 학익동 *** ****아파트 ***-****	박**	
변경	10	수산동	287-1답									
당초	11	수산동	287답	물탱크		EA	1.0	인천 남구 학익동 *** ****아파트 ***-****	박**	인천 남구 학익동 *** ****아파트 ***-****	박**	
변경	11	수산동	287-1답									

제1490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2019. 8. 23. 금요일

구분	조서 번호	소재지	편입 토지	물건의 종류	구 조	단 위	수 량	물 건 소 유 자		토 지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당초	12	수산동	288-1전,288-2대	울타리	비계울타리 H=1.8~2.8m	m	6.3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번길 **,**동 ***호	신** 외2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번길 **,**동 ***호	신** 외2인	
변경	12	수산동	288-9전,288-10대									
당초	13	수산동	288-2대	나무	H=1.5m	주	3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번길 **,**동 ***호	신** 외2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번길 **,**동 ***호	신** 외2인	
변경	13	수산동	288-10대									
당초	14	수산동	296-3전	컨테이너		m ²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도화동 ***	황**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도화동 ***	황**	
변경						m ²	12.7					
			288-3전					-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수골로 **	신**	
당초	15	수산동	296-3전	이동식화장 실		m ²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도화동 ***	황**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도화동 ***	황**	
변경	15	수산동	296-7전			m ²	1.5					
동일	16	수산동	288-5전	그물망울타 리	H=1.0m	m	39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	이**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	이**	
			600-6도							-	국(건설 부)	
당초	17	수산동	296-3전,294-1전	울타리	함석울타리 H=3.4m	m	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도화동 ***	황**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도화동 ***	황**	
변경	17	수산동	296-7전,294-13전			m	27.9					
당초	18	수산동	600-6도	나무	H=3.0m, D40	주	1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	이**	-	국(건설 부)	
변경	18	수산동	600-23도									
당초	19	수산동	298대	헨 스	H=1.3m	m	40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	이**	-	-	
변경	19	수산동	288-13전									
			600-6도					-	-	-	국(건설 부)	
			294-1전					-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도화동 ***	황**	
당초			600-23도					-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	이**	
변경			-					-	-	-	-	

제1490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2019. 8. 23. 금요일

구분	조서 번호	소재지	편입 토지	물건의 종류	구 조	단 위	수 량	물 건 소 유 자		토 지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당초	20	수산동	600-6도	묘 목	H=1.0m	주	6.0	인천광역시 남동구 송현동 **	이**	-	국(건설 부)	
변경	20	수산동	600-23도									
동일	21	수산동	288-5전	밤나무	H=1.5m	주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송현동 **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송현동 **	이**	국(건설 부)
			600-6도					-	-	-		
당초	22	수산동	305-7전	수 목		주	8.0	인천 부평구 갈산동 *** **아파트 ****-****	이**	인천 부평구 갈산동 *** **아파트 ****-****	이**	
변경	22	수산동	305-9전									
당초	23	수산동	298대	간이건물		㎡	36.3	인천광역시 남동구 송현동 **	이**	-	국(건설 부)	
변경	23	수산동	298-1,2대									
당초	24	수산동	299-1전	묘 목	H=2.0m	주	10.0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 **동 ****호	이**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 **동 ****호	이**	
변경	24	수산동	299-3전									
당초	25	수산동	600-6도	묘 목		주	1.0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 **동 ****호	이**	-	국(건설 부)	
변경	25	수산동	600-23도									
당초	26	수산동	600-6도	그물망울타 리	H=1.0m	m	2.4	인천광역시 중구 인종로 ***, **동 ****호	이**	-	국(건설 부)	
변경	26	수산동	600-23도									
당초	27	수산동	300-1대	헨 스	H=1.3m	m	1.0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 **-* **동 *층	주식회 사 *****	-	국(건설 부)	
변경	27	수산동	300-11대									
당초	28	수산동	300-1대,300-7대	묘 목		주	6.0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 **-* **동 *층	주식회 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 **-* **동 *층	주식회사 *****	
변경	28	수산동	300-11대,300-14 대									
당초	29	수산동	300-10대	헨 스	H=2.3m	m	1.0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 **-* **동 *층	주식회 사 *****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 **-* **동 *층	주식회사 *****	
변경	29	수산동	300-17대									
당초	30	수산동	300-2대	담 장	H=1.2m	m	17.0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신**	
변경	30	수산동	300-12대									

제1490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2019. 8. 23. 금요일

구분	조서 번호	소재지	편입 토지	물건의 종류	구 조	단 위	수 량	물 건 소 유 자		토 지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300-10대					-	-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 ***동 **층	주식회사 *****	
당초	31	수산동	301대	간이건물		㎡	40.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수골로 **	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수골로 **	신**	
변경	31	수산동	301-1대									
당초	32	수산동	300-2대	간이건물		㎡	2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주)****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신**	
변경	32	수산동	300-12대									
당초	33	수산동	300-2대, 300-8대	컨테이너		㎡	30.6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주)****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신**	
변경	33	수산동	300-12대, 300-15대									
당초	34	수산동	300-8대	헨 스	H=1.2m	m	22.5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	신**	
변경	34	수산동	300-15대									
			600-6도					-	-	-	국(건설 부)	
			300-9도					-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심**	
당초	35	수산동	300-9도, 300-6잡	헨 스	H=1.2m	m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심**	
변경	35	수산동	300-16도, 300-13잡									
당초	36	수산동	300-6잡	건 물		㎡	28.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심**	
변경	36	수산동	300-13잡									
당초	37	수산동	301대	울타리	HGI울타리 H=3.0~3.5m	m	38.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수골로 **	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수골로 **	신**	
변경	37	수산동	301-1대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492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경신지구 소로3-4호선(경신상로)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9. 8. 1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3-4호선)
 - 명 칭 : 경신지구 소로3-4호선(경신상로)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소로3-4호선 : B=6.0m, L=516.0m
4.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27-14번지 일원
5. 보 상 시 기 : 2018. 1월(진행 중) ~
6. 보상금지급처 : 남동구청 건설과
7. 보상대상
 - 토지보상 : 구월동 627-14번지 외 26필지
 - 지 장 물 : 도로개설 구간에 저축되는 지장물에 한함.
8.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하고 개별로 협의체결 후 현금보상
9. 보상절차 : 보상에 필요한 서류 및 보상금액은 추후 개별 통지
10. 열람기간 : 2019. 8. 19. ~ 2019. 9. 3.
11. 기타사항

토지조서 등은 남동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가 있으신 분은 건설과에 문의(☎032-453-2712) 또는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용지조서

연번	지번 (구월동)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627-14	전	41	41	박**	경기도 용인시 **구 **로***번길 **, **동 ***호	****협동 조합	전라남도 고흥군 **면 **로 **	근저 당권	
					채**	서울특별시 **구 **로***길 **, *동 **호				
					강**	서울특별시 **구 **로***길 **, *동 **호				
2	627-16	도	171	171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삼익세라믹아파트 ***-***				
3	627-15	전	1	1	박**	경기도 용인시 **구 **로***번길 **, **동 ***호	****협동 조합	전라남도 고흥군 **면 **로 **	근저 당권	
					채**	서울특별시 **구 **로***길 **, *동 **호				
					강**	서울특별시 **구 **로***길 **, *동 **호				
4	630-1	답	1	1	신**	서울 마포구 아현동 ***-*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을지로*가)	근저 당권	
5	631-1	답	1	1	신**	서울 마포구 아현동 ***-*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을지로*가)	근저 당권	
6	1068-34	도	135	135	국	국토해양부				
7	632-1	전	1	1	신**	서울 마포구 아현동 ***-*	주식회 사**은 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을지로*가)	근저 당권	
8	632-2	전	1	1	신**	서울 마포구 아현동 ***-*	주식회 사**은 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을지로*가)	근저 당권	
9	산3-2	임	210	210	재인남 동구반* *씨중친 회	만수동 ***-*				
10	633-1	전	77	77	재인남 동구반* *씨중친 회	만수동 ***-*				
11	634-3	전	203	203	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 삼성아파트 ***-****				
12	634-2	전	161	161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삼익세라믹아파트 ***-****				
13	626-8	전	1	1	송**	인천광역시 남구 낙섬동로 *, *동***호(용현동,금호타운)	**은행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통일로 *** (충정로*가)	근저 당권	
14	622-5	공	137	137	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15	산2-5	임	1,191	1,191	신**	서울 마포구 아현동 ***-*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을지로*가)	근저 당권	
16	643-21	도	158	158	공	인천광역시				
17	산5-12	임	40	40	주**	연수구 동춘동 *** 태평아파트 ***-***				
18	산5-11	임	3	3	박** 외3인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 ***-**** (연희동,힐데 스하임)				
19	산5-13	임	1	1	주**	연수구 동춘동 *** 태평아파트 ***-***				
20	1068-37	도	179	179	국	재무부				
21	1068-36	도	261	261	국	재무부				
22	635-25	전	4	4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23	637-1	전	2	2	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번길 **, ***동***호(송도동,송 도더샵그린에비뉴*단지				

						)				
24	638-12	목	69	69	문**	남동구 장승남로 **-** ***-***(만수동, 삼익세라믹아파트)				
25	638-13	창	1	1	문**	남동구 장승남로 **-** ***-***(만수동, 삼익세라믹아파트)				
26	1068-27	도	1	1	국	재무부				
27	635-26	전	5	5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계			3,056	3,056						

□ 지장물조서

연번	지번 (구월동)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634-3	철조망(H=1m)	철조망	70	m	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 삼성아파트 ***-****	
2	1068-26	울타리(H=1m)	주물헨스	45	m	송**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번길 **(구월동)	
3	638-12	울타리(H=2m)	메쉬헨스	10	m	문**	남동구 장승남로 **-**, ***-***(만수동, 삼익세라믹아파트)	
4	635-26	울타리(H=2m)	메쉬헨스	5	m	고**	인천 남동구 구월동 ***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501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안전기준위반)
처분사전통지서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안전 기준위반 차량소유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루4157외 2건 (첨부파일 참조)

2. 기 간 : 2019. 8.21.(수) ~ 9.5.(목)

3. 내 용

가. 납부의무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되며

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가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5).

2019년 8월 21일

남 동 구 청 장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2019년 8월분) 공시송달내역

순번	차량번호	성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위반항목	우편번호	주소
1	**루4157	유*호	2019-08-12	폐문부재	번호판가림(끈)	2154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 *동 ***호 (간석동, **아름빌)
2	**머6662	정*남	2019-08-13	폐문부재	전면,측면,후면 미인증 LED 및 트렁크라인 스마일등 설치	2162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번길 **, ***호 (남촌동, **빌라)
3	**저1749	김*은	2019-08-20	폐문부재	상단 불법등화장치	2154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경로**번길 *, ***호 (만수동, **다세대주택)

공 고

남동구청 공고 제2019-1502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승용차 및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 된 승용차 및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이동안내문을 발송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하나 소유주 미상으로 발송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08월 2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 고 명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08.21. ~ 2019.09.04.

3. 공고대상 : 등록번호판 없는 차량 및 이륜차 3대

5. 공고내용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이동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소유주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내역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수취인명	주소	발송일자	미배달사유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예정)일	보관장소	비고
1	2019-00387	번호판없음 (앞,뒤 없음)	승용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구월1동 1484 선수촌2단지아파트와 통남아파트 사이 일방통행로 도로 주차선 내	2019.09.04 이후	견인예정	
2	2019-00389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1동 111-126) 장도로 37 장어이야기 건너편	2019.09.04 이후	견인예정	
3	2019-00393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2동 620-1) 논현남로 2-4푸른마트 뒤(해오름빌딩 뒤)	2019.09.04 이후	견인예정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505호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시행하는 「냉정지구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보상협의 등이 불가능한 토지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8. 2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익사업의 개요

- 가. 사 업 명 : 냉정지구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
- 나.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다.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135-6번지 일원

2. 공고기간 및 공시송달 대상

- 가. 공고기간 : 2019. 8. 22. ~ 2019. 9. 6.(15일간)
- 나. 공시송달 대상(토지 및 지장물)

소 재 지		토지현황		면적(㎡) [지분]	소유자	
동 명	지 번	지 목	지목(현황)		성명	주소
수산동	135-21	전	전	5[1/3]	이*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번길 **, ***호(남촌동, **빌라)

소 재 지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수량	단위	소유자	
동 명	지 번					성명	주소
수산동	288-3전	컨테이너		1	식	나*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번길 * *동 ***호(구월동, **빌라)
	296-7전	이동식화장실		1	식		

3. 보상방법 및 절차

가.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기한 내

나. 협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건설과(본관 3층)

다. 협의방법 : 감정평가 산정 액에 따른 협의

라.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1)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거쳐 현금으로 지급(은행계좌입금) 할 예정.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협의계약 체결이 가능

2) 소유자 사망인 경우는 상속 절차 이행 후 협의 가능

마.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일반용 및 매도용 각 1부,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포함) 1부, 신분증, 통장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4. 기타 안내사항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설과(☎032-453-27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509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안전기준위반)
처분사전통지서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안전 기준위반 차량소유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루8238외 1건 (첨부파일 참조)

2. 기 간 : 2019. 8.23.(금) ~ 9.7.(토)

3. 내 용

가. 납부의무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되며

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가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5).

2019. 8. 23.

남 동 구 청 장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2019년 8월분) 공시송달내역

순번	차량번호	성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위반항목	우편번호	주소
1	**가8238	이*수	2019-08-21	폐문부재	애플렉 LED 및 리플렉터 LED	21539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로**번길 *, *동 ***호 (만수동, **다세대주택)
2	**오8644	손*호	2019-08-21	폐문부재	후면 미인증 LED	21662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번길 **, ****동 ***호 (논현동, **마을**아파트)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511호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별표 2 제1호 및 제3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및 종묘배양장, 온실 허가에 있어 입지와 구조에 대한 기준을 정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항에 따른 동식물관련시설의 추가적인 건축 기준을 정함
-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도록 토지 분할 기준을 정함
-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조정 설치의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도시관리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973, FAX 453-295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1, 제22조 및 별표2

남동구 조례 제 2019-1511호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별표 2 제1호 및 제3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할 수 있는 자격) 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 등을 건축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한다] 에서 건축물대장(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포함한다)에 등재된 주택을 소유하면서 신청일 현재까지 남동구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해당 토지의 소유자일 것

제3조(입지기준) 영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입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인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동일한 구 지역에 있는 본인 소유 토지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우량농지(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 또는 지목 상 임야가 아닐 것. 다만, 현재 임야인 경우에도 항공사진측량 판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토지이용상태가 전·답일 경우에는 신축 가능함.
3.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 및 기존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닐 것. 다만, 영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면적 안에 포함되

어 진입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신축 가능함.

4. 축사는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경계와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함. 다만, 축사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가능함.
5. 하나의 토지를 2개 이상의 필지로 가분할 후 제3자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행위는 허가처리하지 아니한다.

제4조(구조 등) 영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최고높이는 4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건축물은 하나의 동으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완화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건축을 위한 성토는 지반고 5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축사에 벽체를 설치할 경우에 그 높이는 1.2미터 이하 조적조로 한다.
4.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경량철골조, 조립식 패널조, 철파이프조 중 어느 하나의 구조일 것.
5.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제5조(추가적인 건축 허가기준) 구청장은 영 별표 1 제5호라)에 따라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를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는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1개 시설의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다.

1. 제3조의 입지기준에 적합한 토지를 소유한 자
2.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외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한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을 소유하며, 허가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

제6조(토지 분할의 허가기준) 영 별표 2 제1호차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대지의 조경) ① 축사·작물재배사·사육장·육묘장·종묘배양장·온실 및 영 별표 1 제5호 및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호와 같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 중에 있거나 허가를 신청 중에 있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종전 행위허가 처리방식에 따른다.

[별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 허가 기준(제5조 관련)

1. 목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전을 하고자 함

2. 용어의 정의

가. “분할”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나. “택지식”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다. “바둑판식”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라. “기획부동산”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기획하여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에 해당하는 분할을 하려는 자
- 2)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여 부동산 질서를 해치는 자
- 3) 신문,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다수에게 분양·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에 해당하는 분할을 하려는 자

3. 분할의 허가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가할 수 있다.

가. 관계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할 경우, 택지식 또는 바둑판

식에 해당하는 분할이 아닐 것

나. 기획부동산(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이 아닐 것
다. 하나의 토지에 대하여 분할이 가능한 필지는 1년 내 총 3필지 이하일 것.
다만, 상속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의 법적비율에 따른 분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19-112호

남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남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19.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체를 홍보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 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우수업체 지원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6조)
- 1회용품 사용저감 교육 홍보사업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1회용품 사용저감 우수자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9. 8. 20 ~ 8. 26.(7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3, FAX 453-502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체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업체를 환경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수업체 중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5조(우수업체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업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우수업체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과 홍보)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민간단체, 공익법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민간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관계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제5조(환경우수업체 지원) 및 제7조(민간위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작성자 : 남동구의회 의원 반미선(인)

[참고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23., 2011. 4. 28., 2014. 1. 21.>

1. 삭제 <2017. 11. 28.>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부산물"이란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말한다.

4. "지정부산물"이란 부산물 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에너지회수"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기준(이하 "에너지회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8의2. "폐자원에너지"란 고형연료제품, 폐기물합성가스 등 폐기물로부터 회수된 에너지 또는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환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0.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장비·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재활용산업"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을 말한다.

12.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1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計量)을 할 수 있고 품명(品名)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4.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環境標識)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7. "재질·구조개선 대상제품"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4. 1. 21., 2015. 1. 20., 2017. 11. 28., 2018. 12. 24.>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자

2의3. 제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포장재 겉면에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비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기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 7의2.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
 8.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10. 제2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2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13. 제25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4. 제2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25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자
 16.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3. 8. 13., 2015. 1. 20.>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14. 1. 21.>
- [전문개정 2008. 3. 21.]
- [시행일 : 2019.12.25.] 제41조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19-113호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22.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2020년 1월 16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남동구체육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토대를 마련하여 남동구 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 체육회 설립, 사업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6조)
- 체육회 정관 및 재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11조)
- 체육회 임원 및 사무국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제15조)
- 체육사무 위임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9. 8. 23 ~ 8. 28.(5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3, FAX 453-502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체육 운동을 범시민화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남동구 체육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체육회”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체육회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립) 체육회는 법인으로 설립한다.

제5조(대상사업) 체육회는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대한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
4.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5. 체육인의 복지 향상

6.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연구
9.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10. 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11. 체육 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
12.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수익사업) 체육회는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정관)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관을 정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 관련 규정
5. 회장 및 부회장 선출 규정
6.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 총회 관련 규정
7. 임원 및 직원 관련 규정
8. 사업 수행 규정
9. 정관 변경 규정
10. 그 밖에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체육회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본재산) ①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체육회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확보하고 기본 재산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현물
3. 그 밖의 현물

제9조(기금)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관리 등 세부사항은 체육회가 따로 정한다.

②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부금
3. 제6조의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기본재산 운용 수입금
2. 기부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10조(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체육회 운영비
2. 제4조에서 규정한 대상사업 지원
3.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회 설립비용 및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임원) ① 체육회는 회장과 부회장, 감사와 이사를 두며, 임원은 비상근직으로 체육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 계 인사로 한다.

② 회장은 정관에 따라 선출하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13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정관에 따라 운영한다.

제14조(사무국) ① 체육회는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상근직으로 한다.

② 체육회 사무국 직원 임면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등) ①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체육회를 대표하고 사무국장은 체육회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6조(사업연도) 체육회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체육회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무의 위임 등) 구청장은 체육진흥과 체육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운동경기부 및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체육회에 위임하거나 위탁 할 수 있다.

제19조(운영규정)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남동구체육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체육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체육회가 제4조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한 때에는 체육회의 모든 권리·의무·재산을 포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관계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련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 지방자치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비 용 추 계 서(제8조 및 제11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조의 기본재산 및 제11조의 재정지원 규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회 설립 및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남동구 체육회 운영 지원은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으로, 그 동안 소요된 경비를 기준으로 추계한다.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행사실비지원	사무국장 인건비	체육회 운영지원	체육회 행사비지원
군구체육회 운영지원	104,720	11,340	20,880	65,500	7,000

■ 5차년도 사업비 현황표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세출	지방비(구비)	104,720	104,720	104,720	104,720	104,720	523,600

다. 재원조달 방안 : 구비 90%, 시비 1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남동구의회 임애숙 의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일반회계								
세 출								
군구체육회 운영지원		104,720	104,720	104,720	104,720	104,720	523,600	
재원 조달		104,720	104,720	104,720	104,720	104,720	523,6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10,440	10,440	10,440	10,440	10,440	52,200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94,280	94,280	94,280	94,280	94,280	471,40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제2조제9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체육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는 제외한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 1. 15.]

[시행일 : 2020. 1. 16.] 제43조의2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9-66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9. 09. 05.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9. 08. 21. ~ 2019. 09. 04.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일 반 음식점	2004-0200058	스마일 치킨	이O희	경인로653번길 15 (간석동, 102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9.02.26	2019.09.05
일 반 음식점	2007-0199334	에바다분식	정O훈	구월로115번길 63 (간석동, 1층일부)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9.03.04	2019.09.05
일 반 음식점	2004-0199574	소은푸드	김O현	남동대로370번길 119, 202호 (논현동, 견우프라자)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9.03.29	2019.09.05
일 반 음식점	2017-0200497	더컵스(The Cups)	이O준	남동서로236번길 30 ,107호 (논현동, 논현푸르지오)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9.04.30	2019.09.05
일 반 음식점	2012-0200076	잇츠	남O현	논고개로 71, 201호 (논현동, 가산타워)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8.06.30	2019.09.05
일 반 음식점	2016-0199701	한봉수명태조림	이O영	논현남로30번길 17, 1층 (논현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9.03.05	2019.09.05
일 반 음식점	2015-0199088	한국식 왕돈까스1980	김O호	백범로294번길 19, B104호 (간석동, 간석LH)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7.02.22	2019.09.05
일 반 음식점	2017-0200333	만년닭강정	박O분	석산로 156, 107호(간석동, 간석래미안자이상가)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9.06.30	2019.09.05
일 반 음식점	2016-0200189	홍계하우스	신O경	소래역로30번길 50, 1층, 2층 (논현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9.01.08	2019.09.05
일 반 음식점	2012-0199307	금문	김O	은봉로 309, 1층 (논현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7.07.31	2019.09.05
휴 게 음식점	2016-0199684	불탕국물떡볶이	홍O권	백범로 457, 104호 (간석동, 성우네오빌)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8.03.09	2019.09.05

6. 고지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9. 09. 04.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3

2019. 08. 2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